

칼럼-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의 동향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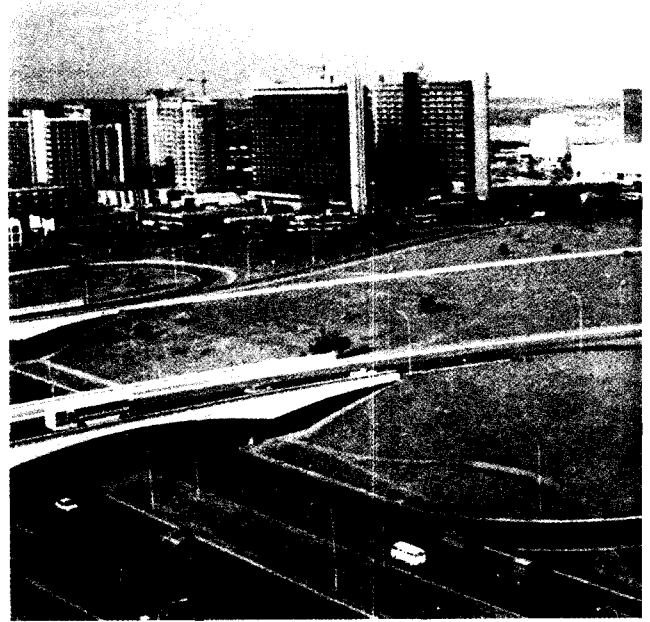
한 상 옥
아태환경·경영연구원장

(들려라!)

- 서울대 MPA, 상급관리대원
- 국립대학원 산업관리과정, 환경위생과장(WFO), 환경공학과장(APO) 연수
- 미국보건가꾸지문관, 환경처 실장 역임
- 시사간담회, 객조교수, 강원대 초빙교수, 대전대 겸임교수 역임
-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국제환경영향평가학회(AEA) 정회원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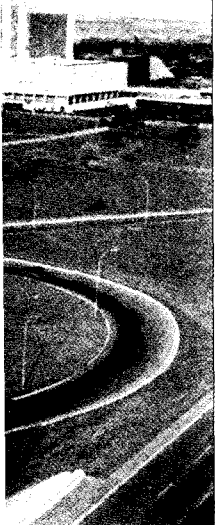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론, 환경영향평가제도,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정책론, 기업경영, 환경관리, 수질관리
- 환경정책론, 환경정책론
- 환경의 성찰, 환경화학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구성요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 사회과학(Social science), 환경설계기술(Environmental design arts) 등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므로써 경제·사회·환경이 건전한 조화를 이루어 지속성(Sustainability)을 도모토록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과학성과 민주성이 증시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수행과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시켜 보면 스크리닝(Screening), 스코핑(Scoping), 예측(Prediction), 평가(Assessment), 악영향의 완화(Mitigation), 검토(Review), 승인(Decision), 모니터링 및 감사(Monitoring and Auditing)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어떠한 환경영향이 파악될 필요가 있는가, 환경영향의 크기·중요도·범위는 어느 수준인가, 영향은 의미가 있는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평가와 환경평가서는 적절한가, 사업의 진행이 승인되어야 하는가, 영향의 예측이 적절하고 완화수단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선택의 연속을 통해 적절한 미래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행동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1969년 「인간과 환경간의 생산적이고도 친숙한 조화를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선언하며, 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중요한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이해를 제고하며,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이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70년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법의 명칭 및 목적을 서술한 전문과 본문의 성격을 띤 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의회의 선언(Congressional Declar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표제하의 제1장에서는 「정책과 목적,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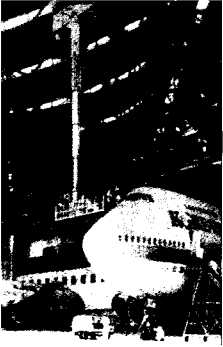
정책의 검토, 다른 법정 의무 및 기존권한의 보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표제하의 제2장에서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환경위원회 구성, 임무 및 의회에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1장제102조(행정)C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항에서는 「인간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기타 중요한 연방의 행위에 관한 모든 건의서 또는 보고서에는 책임있는 자에 의하여 「제안행위의 환경영향」, 「당해 제안이 실시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의 악영향」, 「제안된 행위에 대한 대안」, 「인간환경의 국부적·단기적인 사용과 장기적 생산성의 유지 및 증대와의 관계」, 「제안행위가 시행될 경우 자원의 보전 불가능 및 회복 불가능에 대한 보충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기에 앞서 책임있는 연방 담당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합중국법전 제5장제552조의 규정(Section 552 of title 5 United State Code)에 따라 보고와 환경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연방주 및 지방기관의 의견과 견해에 대한 사본을 대통령, 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도 제시되어야 하며, 당해 제안과 함께 관련기관의 현행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NEPA는 소관업무에 불구하고 모든 연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제도가 되어 각국의 제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현재 OECD 가입국가 모두를 비롯하여 100여개 국가가 국가제도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도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각종 권고·선언·성명·협약·의정서 등의 발표와 함께 개발 원조시에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UNEP는 1987년 6월 17일 이사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이라는 정부간 합의문서(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ision 14/25 of the Governing Council of UNEP, of 17 June 1987)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표 및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착수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의사결정과정 및 각국의 법과 일치한 적절한 절차의 실현을 조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개발행위가 국가간(지역간) 경계를 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각 국가간(지역간)의 정보교환·통지·협의 등 상호 교환적인 과정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의 3가지이며, 원칙은 「초기단계에서의 정부 등에 의한 환경영향의 고려」, 「법률 등으로 계획과정에서의 적용」, 「초기단계에서의 환경문제 규명」, 「환경영향평가 요건 및 방법의 설정」, 「환경적 중요성에 상응한 평가」, 「수집된 정보의 공정성 검증」, 「의사결정 전에 공중의견의 제시 기회 부여」, 「공중의견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대상사업 실시 여부 판단」, 「이용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승인 후 적절한 기관에 의한 감독」, 「지역간 이익을 고려한 정보교환 및 협력」, 「잠재적 환경영향의 통지 및 적절한 협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절한 절차 확립」의 13가지이다.

이와 같이 UNEP의 EIA 문서는 N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EIA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NEPA와 함께 세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화와 운용의 지침이 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동향

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1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그 해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사업까지 확대되어 2000년 12월말까지 2,153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정부내 환경보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환경부(환경관리청 포함)와 협의하여 왔다. 이와 같이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협의됨으로서 개발부처를 포함한 개발관계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 온 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제도운영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개발을 합리화시켜 주는 면죄부로 매도되는 가운데 환경보전법의 거듭된 개정과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및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제정)으로 근거법이 바뀌고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이 왜곡되어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전부터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앞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온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과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개발 계획 및 사업의 인가, 허가, 승인 등에 앞서 해당 행정관청 등이 미리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부서(1979년까지 보건사회부, 1980년 이후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와 협의하여 왔던 사전협의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전협의제도 하에서의 사전협의대상은 도시계획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한 행정계획(51개 행정계획)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에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환경기준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와 2000년 8월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10개의 행정계획과 20개의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다른 법령에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29개의 행정계획(관련 구비서류는 환경정책기본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 협의대상의 확대, 협의시 첨부서류의 구체화, 협의내용의 개발계획에의 반영, 인허가승인시 확인, 협의내용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종전의 사전협의제도보다 강화되었으나 정책과 일부계획이 법령개정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추후 협의 대상의 추가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사전협의 실적은 제도의 강화 이전인 1994년부터 2000년 9월까지 개별법령에 의한 실적은 3,515건으로 연평균 539건이고 1993년 4월부터 시행된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실적은 1,251건으로 연평균 186건에 이른다. 한편 2001년 1월부터 그간에 별개 제도로 운영되어 온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 12월에 제정되고 약해서 통합평가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폭이 넓어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술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2001~2010)프로그램에 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과제를 포함시키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발과 제도개선이 일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1992년 환경보전을 개발과정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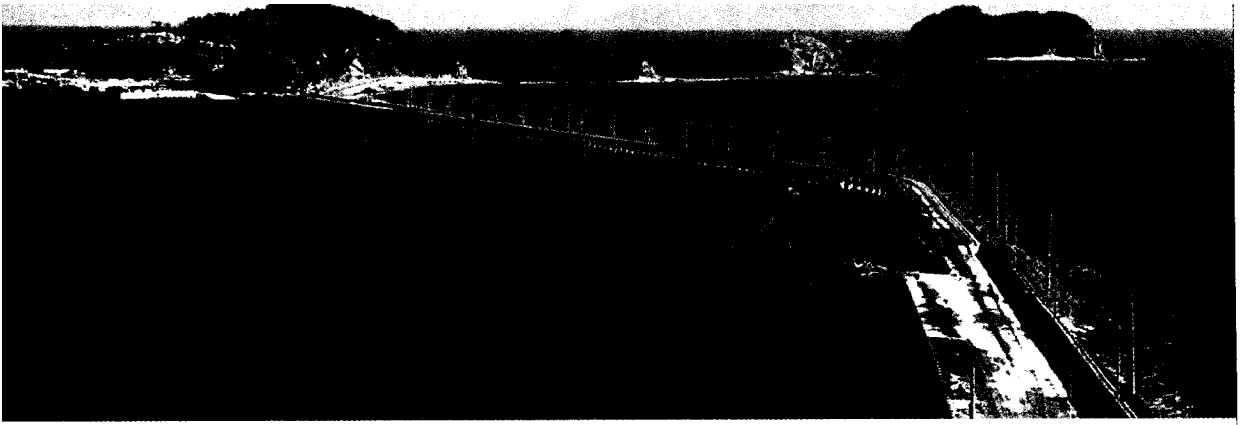
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을 기조로 하는 리우선언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데 있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국가적 제도로 도입되어야 함을 천명한 이래 이의 시행을 뒷받침할 유엔지속가능위원회(UNCSD)가 설립되고 동위원회는 2002년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실적을 확인하게 되므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층 촉진될 것이다.

한편 UNEP는 1996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가(Barry Sadler)의 말을 빌려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단계를 초기개발단계(197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범위의 확장단계(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절차의 재정립단계(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성 패러다임단계(1990년 중반부터~)로 구분하고「초기발전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제도적인 정비와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분석기법의 소개가 있어 왔고, 「범위의 확장 단계에서는 사회, 보건, 안전 등 관련 요인을 고려하고 대중 참여 기회의 증진 및 환경영향관리의 제고 등 발전이 있었으며, 「절차의 재정립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준에서 정책, 계획 및 기타 과정까지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와 누적영향의 고려, 모니터링 및 감사 그리고 사후관리과정을 포함시키는 방향전환이 있어 왔다고 평가하고, 「지속성 패러다임단계에서는 사업수준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이 드러나 전략환경평가의 개발, 국제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요구 및 환경분쟁 해결절차의 소개 등의 노력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경제규범과 환경규범을 선도하는 OECD는 2001년 4월 6일에 발간한「OECD 환경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인구증가, 세계화, 경제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및 기술진보등으로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하고, 당면한 가장 위태로운 환경적 관심사로서「재생가능한 자원의 지속성에 위배되는 비지속적인 이용, 「생태계의 열화, 「인간의 삶의 지지기반인 환경시스템의 파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지역적인 분야 및 자연자원으로서 농업·담수·수산·산림·생물다양성분야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에너지·기후변화·교통·공기질분야에서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2001년 5월 16일에는 21세기 첫 번째 10년의 「OECD 환경전략보고서」에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태계 유지, 「경제성장으로부터 환경적 압력의 배제, 「지표개발을 통한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의 개선, 「사회와 환경의 상호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구환경문제의 대응체계구축에 이어서 통치와 협력의 증진」이라는 5대 목표가 담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1년 5월 27일부터 동 6월 4일까지「도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하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영향평가학회(1981년 창립, 111개국 1200명 가입, 이하 IAIA라고 칭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로 명명된 이래 SIA(Social Impact Assessment), TIA(Technology Impact Assessment), HIA(Health Impact Assessment), SEA(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CIA(Cultural Impact Assessment)등 각종의 영향평가기법의 개발과 이들의 통합적 접근을 거쳐 발전될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에게 국가기술자





격제도의 하나로서 「국가기술사자격 수준의 공인환경평가사와 기사수준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을 연구」케한 바 검정방법은 이론과 실무로 하고 1차 검정과목으로 「공인환경평가사의 경우 환경정책론, 환경계획론, 환경영향평가론, 환경영향평가 관련법규를, 2차 검정과목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환경영향평가사의 경우, 1차 검정과목으로 환경학개론, 환경생태학, 환경영향평가론, 환경영향평가관련법규」를, 2차 검정과목으로 「환경영향평가실무」를 면접에 의해 치루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에게 국가 자격을 부여하게된다면 지금까지 등한시되어온 동분야의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이념이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 삶의 질을 향상임을 고려할 때, 환경·보건·안전에 관련된 과목이 검정과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동향과 상황의 전개는 그간 변질되어 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형이 되고 있는 NEPA와 UNEP와 같은 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지속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는 OECD의 지침의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특히 IAIA는 SIA, TIA, HIA, SEA, CIA 등 기법개발과 통합적 접근이 새로운 제도의 틀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혁신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당면 과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의 정립, 지속성지표의 개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방안 강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합리적인 통합방안, 합리적인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의 확보와 평가결과의 신뢰성 증진방안, 협의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인·허가 승인기관,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자, 협의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의 제시와 함께 항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환경영향평가 예측·평가기법의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환경영향평가 내실화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영향평가기법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바, 예컨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온 서식지의 평가절차(Habitat Evaluation Procedure, HEP)기법, 경제적인 영향평가방법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기법,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여행비용법 및 지표항목별 평가기준의 개발과 정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녹지자연도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생태·자연도 작성은 진일보한 조치라 생각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로 긴급히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방법(EIA)에 따르는 것이 어려운 바, 사전에 전문가간에 합의된 빠르게 평가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덴마크에서 제도화가 시도되고 있는 신속영향평가기법(Rapid Impact Assessment Matrix, RIAM)과 같은 평가기법의 개발도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의 적정화와 역할제고를 위한 환경경영체계(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인 도구 또한 환경영향의 판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EMS와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 EA)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접목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대부분 연구개발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분야에서 전향적으로 다루워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의 핵심수단이라는 점과 동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지난 7월에 발표된 차세대핵심기술개발분야의 선정과제중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뒷받침할 과제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각종영향평가제도의 내용통합을 전제로 한 기존평가제도의 임시적 통합이라는 점과 현재의 통합평가가 오히려 종전 제도가 지닌 부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인구역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서 다루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적인 제도의 예를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환경영향평가 본질에 부합되는 제도로의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것이다. 이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도 함께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을 합리화 시켜주는 면죄부라는 오명이 공공개발사업과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등 개발사업에서 비롯되고 이들 사업이 비용면에서 낭비적이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비등하고 있는 바 공공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당위성을 앞세운 밀어붙이기 개발방식에서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도록 전략환경평가의 제도화와 제3자에 의한 사업의 점검·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강댐 건설사업,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 시화호 건설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못미치는 비용이 그 주원인일 것인 바, 개발사업자 및 대영업체 스스로의 자정운동과 함께 저가계약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계통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도로건설 등 59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을 환경부고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비교한 한 보고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예산액은 동 산정금액의 53.2%이고 계약금액은 동 산정금액의 41.1%로 적시되고 있는 바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을 조장하는 단면이기도 한 바 적절한 비용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의 경제성·공공성·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이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절차·기법 등의 개발을 주도하는 부처(사업자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역할 증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개편등 교육제도의 정비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적인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스크리닝, 스코핑, 예측·평가, 약영향의 완화, 검토·승인, 모니터링 및 감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과정에서의 개발사업자, 전문가,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킬 소지를 밝혀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므로써 환경영향평가서가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지원하는 그린패스पोर्ट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중요법적 맹목식 방식에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응방식으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환경보전**

